

## 화재안전 관련 건축법령 개정 현황

2018년도 제8차 중앙건축위원회(8.31) 심의안을 중심으로

글. 여인한\_화재안전연구소 연구위원

### 추진 배경

국내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정은 크게 건축법과 소방관련법으로 양분된다.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법에서는 1962년 이래로 일반적 건축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기존의 건축법 시행규칙 중 화재안전 관련 조항을 별도의 부령으로 모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방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방규칙에서는 발화-연소확대-구획화재-전층화재로 이어지는 화재 전반의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적 대응방안으로서 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통로(피난계단), 내화구조의 설계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재실자의 신속한 대피와 원활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피난동선 선별 기준 및 소방활동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2015년 의정부 도심형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화재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전반의 개선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화재안전 종합대책 TF'를 구성(2018.1.25) 및 운영해 왔다. 국토부 TF는 (1)건축물 마감재료, (2)방화구획, (3)피난시설 및 소방활동 지원, (4)건축자재 품질관리 등 4개 분과로 구성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화재안전연구소, 국민생활연구본부, 건설기술안전본부)이 각 분과장을 맡아 분야별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주도한 바 있다. 본 글에서는 위 TF 결과로 마련된 건축법령의 화재안전 조항 개선안에 대해 최근 중앙건축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이번 건축법령 개정안은 TF 각 분과별로 집중 검토된 항목 별로 정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

1)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금지 확대(영 제61조 제2항, 피방규칙 제24조 제5항, 제6항,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방지구조기준 제7조)

- 현행 외부마감재는 6층 이상(또는 22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등급의 외벽마감재료 또는 매 층마다 화재 확산방지구조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3층 이상 6층 미만인 건축물 및 피난약자 이용시설(건축물 높이와 관계 없음)로 대상 확대

- 단, 3층 이상 6층 미만 건축물의 경우 난연등급 이상의 마감재료 사용 혹은 매 2개층마다 화재확산방지구조 설치

2) 필로티 주차장 설치 건축물 대상 외부마감재 기준 강화(영 제61조 제2항, 피방규칙 제24조 제7항)

- 6층 이상(또는 22m 이상) 건축물에 대해 필로티 천장과 필로티 벽체는 준불연등급 외벽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필로티 주차장 설치 건축물로 관리 대상을 확대

3) 가연성 내부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 건축물 확대(영 제61조 제1항)

-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 건축물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학교전체와 불특정다수 이용시설인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대상건축물에 포함

#### 2.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강화

1) 층간 방화구획 전면 확대(영 제46조 제8호, 피방규칙 제14조 제1항)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은 매 층마다 방화구획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층부 화재 시에도 화염 및 연기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 2층도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예외

2) 필로티 주차장 대상 방화구획 기준 도입(피방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

- 현행 건축물 1층은 방화구획 대상을 완화하고 있으나, 필로티 건축물 1층에서 주차장과 주차장 외 부분을 방화구획 하도록 하여 필로티 건축물 1층을 통한 피난용 이성 강화

3) 방화문 작동방식 개선(피방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 온도,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온도보다는 연기나 불꽃감지가 먼저 이루어지므로 연기 및 불꽃 감지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고 온도감지에 따른 작동은 연기 및 불꽃감지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로 예외적 허용

4) 방화담퍼의 화재안전기준 개선(피방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 자동방화셔터·방화문 및 방화담퍼 기준)

- 방화담퍼의 사양기준을 삭제하고 성능평가방법 및 요건을 명확화하여 방연성능과 내화성능 2가지 요건 만족하도록 하고 작동은 연기감지를 통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방식 외에 상시적으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는 온도 감지를 통해 닫히는 방식 병행하도록 개선

3. 피난 및 소방활동 지원 기준 개선

1)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기준 도입(피방규칙 제8조 제1항)

-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이 없어 인접한 직통계단 동시 이용이 불가능한 문제 개선을 위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는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스프링클러 설치 혹은 복도 등 통로가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갖춘 구조로 구획된 경우 완화기준 적용)

2)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 개선(영 제34조 제1항)

- 최소 2개 이상의 직통계단 간 최소 보행거리 기준(30m)은 만족하고 있으나, 건축물 중심에 직통계단 2개소가 집중 설치되어 재실자의 양방향피난이 곤란한 문제 개선을 위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

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까지 측정하도록 개선

3)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자동방화셔터·방화문 및 방화담퍼 기준)

- 일체형 방화셔터가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재실자의 피난에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지적과 지지체 심의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악용하여 건축물 조건과 상관 없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해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전면 금지

4) 소방관 진입창 기준 마련(피방규칙 제17조의 2)

- 건축법 제51조의 11층 이하 건물에 대한 소방관 진입창 규정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으로 소방관 진입창에 빛 반사가 가능한 역삼각형 표식을 부착하여 주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치는 2층 이상의 각 층에 위치한 창문 중 진입이 용이한 곳으로서 수평거리 4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 및 이행강제금 상향 조정

1) 방화문 인정제도 도입(피방규칙 제26조)

- 최근 아파트 하자 소송 등을 통해 불량 방화문 제조·유통 및 시공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나 현행 시험성적서 확인제도의 한계로 제조기업의 품질관리 역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 개선을 위해 방화문 제조기업의 공장품질확인, 성능평가 및 현장품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건설연 인정업무 수행)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영 별표15)

-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낮아 위법사향의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불이행하는 경우 현행 이행강제금의 최고수준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

참고자료

· 2018년도 제8차 중앙건축위원회(8.31) 심의 회의자료, 국토교통부